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1. 2.(목) 12:00 / 배포 2025. 1. 2.(목) 08:30
<1. 3.(금) 조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조사·심의 협조 구분 및 감경 요건 보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4405)
		담당자	사무관	손은정 (044-200-44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정 의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생 략)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Ⅱ. 정 의 4. 부과과징금 ---------- ---------- 해당---------- ---------- ---------- ---------- ---------- ---------- ----------. 5. 관련매출액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 ---------- ---------- ---------- ---------- ----------해당------ ---------- ---------- --------. 2)---------- ----------해당 ---------- ---------- ----------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 ---------- ---------- ---------.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3)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 --「해당 ---------- ---------- 위「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 매출에누리(불량품, 수량 부족,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 ----------.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 설>	2)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생 략).	3) (현행 2)와 같음)
3) 영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4) 영 제13조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
6. 위반기간	6. 위반기간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1)---------- ---------- ---------- 해당 ---------- ----------.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 해당 ---------- ---------- ---------- ---------- ---------- ---------- ---------- ----------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0. 심의일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	----------

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 ---------- ---------- ---------- ---------부친 ---------- ---------- ---------- ---------- ------.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2. (생 략) 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2. (현행과 같음) 3.---------- ------, 해당 ---------- ---------- ---------- -------.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생 략) <신 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아래 가, 나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생 략)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현행과 같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 ----------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이하 생략)	----------.
2. (생 략)	2. (생 략)
3. 2차 조정	3. 2차 조정
나. 가중사유 및 비율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생 략).	(현행과 같음)
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1) ----제81조 제2항----
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제81조 제2항----
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3) 조사협력 등	3) 조사·심의협조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 ---------- ---------- ---------- ---------- ---------- ---------- ---------- ---------- ---------- ---------- ---------- ---------- ---------제103조---------- ---------- ---------- ----------.
1) (생 략) 가)~ 나)(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나)(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 ---------- ---------- ---------- -도모하기 ----------.
2) (생 략) 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등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등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생 략) 가) ---------- ---------- ---------- 자본잠식률---------- ---------- ---------- ---------- ---------- ---------- ----------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 ---------- ---------- -----.

3)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 ---------- ---------- ---------- ---------- ---------- ---------- ---------- ---------- 충당부채(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
<신 설>	<부칙 <제2025-1호, 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Ⅳ.3.다.3).나)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